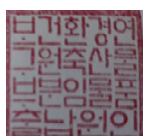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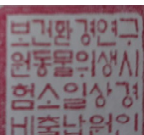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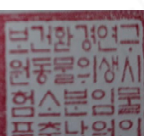


2018년 2월 1일
서울특별시

1. 공고사유 : 2017. 7. 1자 서울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
2. 신규 직인의 최초 사용 시행일 : 2018. 1.
3.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내용
 - 가. 폐기직인

소관부서	직인명	규격 및 서체	인영	직인폐기일자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	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일상경비출 납원인	1.8cm×1.8cm 서울서체		2018. 1.
	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분임품출 납원인	1.8cm×1.8cm 서울서체		2018. 1.

나. 등록직인

소관부서	직인명	규격 및 서체	인영	직인폐기일자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 위생시험소	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일상경비출납원인	1.8cm×1.8cm 서울서체		2018. 1.
	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분임품출납원인	1.8cm×1.8cm 서울서체		2018. 1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-191호

**건축물 및 정비사업(재개발·재건축)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
심의기준(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) 개정고시안 행정예고**

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「건축물 및 정비사업(재개발·재건축)

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(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)」(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-428호, 2017. 11. 23.)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1일
서울특별시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신 기후체제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전환 및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하여 도시 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분야 대응을 강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에 태양광발전 설치 비율 마련
 -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(kW) 또는 에너지 생산량(kWh/년)의 20% 이상 태양광발전 설치
 - 단, 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”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
 -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률 산정 시 옥상녹화로 인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‘18. 2. 21.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(참조: 환경정책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, 서소문청사 1동 11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리라 주무관(☎ 2133-3545, FAX 2133-1019, E-mail : kimlila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※ 이 「건축물 및 정비사업(재개발·재건축)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(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)」 개정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규 제 영 향 분 석

I. 분석대상규제의 개요

1. 규제사무명	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	2. 구 분						
		신설	○	강화	○	내용 심사		존속 기한 연장
3.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	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(환경정책과장 이상훈, 환경조정평가팀장 이원형, 담당 김리라)							
4. 근거법령명등	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2조, 「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」 제29조제2항				관 련 규제수	1건		
5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해당 규모의 개발사업(건축물, 재개발·재건축)의 사업자 등							
6. 규제존속기한	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관련 법령 제정시까지							
7. 종전규제 및 신설 (변경) 규제의 내용	• 신·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- 신·재생에너지 설치규모(kW) 또는 에너지생산량(kWh/년)의 20%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· 단,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”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불가능할 경우 사유 제시 · 건물옥상 내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녹지는 생태면적을 산정시 옥상녹화로 인정							

II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1. 규제 변경의 필요성

- 신기후체제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추진 중으로 우리시 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통해 전력자립률 제고 및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자 함
 - 태양광은 건물 옥상 및 벽면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여 적용성 및 확장성 면에서 우리시 최적 에너지원으로 운영이 가능함
- 건축물 연면적 10만㎡ 이상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(설계) 단계부터 태양광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

2.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

- 본 심의기준은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해 2005년